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마케팅」 과업지시서

2026. 07. 30.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기업)

선정과제 수행에 따른 홍보·마케팅 용역 발주 문서

1. 과업개요

- 가. 사 업 명: 학교급식 잔식나눔 디지털 이력관리 플랫폼(올수) 홍보 마케팅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다. 과업예산: 금48,093,091(금사천팔백구만삼천구십일원원, 부가가치세별도)
 라. 수행근거: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기업 부문) 선정과제 「학교 급식 잔식 나눔의 투명한 디지털 이력 관리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협약사업 중 일반 수용비 (광고선전비, 영상제작비) 비목 집행

○ 예산 세부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정부지원금(원)	민간부담금 현금(원)	합계(원)
매체 광고료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네이버·구글), SNS광고(인스타그램 등) 집행 및 광고 소재·홍보물 제작 등	35,343,091	6,750,000	42,093,091
영상제작비	잔식 나눔 관련 영상 기획·촬영·편집 등	6,000,000	-	6,000,000
합 계		41,343,091	6,750,000	48,093,091

※ 본 과업 예산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청구함

※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마. 대금 지급 조건: 대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성과 조건 충족을 전제로 지급함.

구분	지급률	금액(VAT 별도)	지급 조건
선금	40%	19,237,236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 승인 후 지급
중도금	30%	14,427,927	과업기간 중간 시점 성과보고(중간보고) 승인 후 지급
잔금	30%	14,427,928	KPI 최소 달성기준(80%) 충족 및 최종 결과보고서 승인 후 지급
합 계	100%	48,093,091	

- 바. 감액 기준: 최종 검수 결과 항목별 달성률이 최소 달성기준(80%)에 미달하는 경우, 잔금에서 미달 항목의 미달률에 비례하여 감

액할 수 있음. 감액 산정의 세부 방식은 계약서(특수조건)에 따름
사. 지체상금: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함. 본
과업은 에코스타트업 협약기간(2026.10.31.) 내 완료가 필수이므
로 과업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2. 과업목적

- 가. 우수 잔식나눔 플랫폼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참여학교, 지자체, 복지기관 확산 기반 마련
- 나. 홍보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한 잔식 나눔 학교 확산 및 전국 단위 확대 지원
- 다. 자원순환, 탄소중립 정책 부합 사업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및 공신력 확보

3. 과업범위

- 가.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한 광고영상 제작
- 나.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 집행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매체 노출)
- 다. 언론보도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검색 신뢰 자산 확보
- 라. 구글애즈, 메타(인스타, 페이스북 등) 타겟광고 집행
- 마. 블라인드 타겟광고를 통한 공무원 정밀 타겟 침투
- 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채널 월간 관리
- 사.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B2G 아웃리치: 사업설명회, 시연회, 간담회 등 대면 미팅 기회를 발굴, 주선하고 성사시키는 활동
(세부 기준은 II. 5. KPI 참조)

Ⅱ

세부 과업내용

1. 매체광고 집행 (정부지원금 35,343,091원 + 민간부담금 6,750,000원)

- 가.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 광고(네이버, 구글 등) 운영
- 나. SNS 광고(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등)를 활용한 ESG, 지자체, 교육청 등 주요 타겟 대상 맞춤형 광고 운영
- 다. 구글 애즈(Google Ads), 메타(Meta), 블라인드(Blind) 등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 타겟 광고 및 리마케팅 운영
- 라. 홈페이지, 블로그, 상세페이지, 카드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마. 학교, 복지관, 교육청 등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광고 소재 및 랜딩 페이지 제작
- 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검색 노출 및 콘텐츠 최적화
- 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콘텐츠 기획·게시 및 운영 관리
- 아. 광고계정 구축, 키워드 전략 수립 및 광고 운영 관리 단, 모든 광고계정(네이버, 구글애즈, 메타, 블라인드 등)은 발주처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대상자는 운영 권한만을 부여받으며, 과업 종료 시 계정, 집행 데이터, 전환 픽셀, 잠재고객 목록 등 일체를 발주처에 온전히 반환 및 이관하여야 함.
- 자.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홍보를 통한 검색 노출 강화
- 차. 광고 운영 성과(노출, 도달, 클릭, 전환 등) 분석 및 정기 성과보고서 제출. 성과보고서는 주간 리포트(요약) 및 월간 성과보고서(상세)로 하며, 노출, 클릭 등 수치는 광고 플랫폼에서 발급되는 원본 리포트를 근거로 함.
- 카. 매체비 집행의 투명성: 매체광고비 중 매체 실행비(광고 플랫폼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며, 계약대상사는 매체별 집행 내역서(매체사 발행 인보이스 등 원본 증빙)를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함. 항목별 집행 내역은 집행 전 발주처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홍보영상 제작(학교 잔식 나눔 앱 프로세스 소개 영상) (정부지원금 6,000,000원)

- 가. 영상 기획 : 콘셉트 설계 및 시나리오 및 스크립트 작성
- 나. 촬영 및 연출 : 촬영 계획 수립 및 현장 연출 및 인력 운영
- 다. 음향 작업 : 배경음악(BGM)선곡 및 효과음 등 녹음
- 라. 영상 편집: 편집, 색 보정 및 시각효과 제작
- 마. 자막 및 모션그래픽 : 자막 제작 및 모션그래픽 삽입
- 바. 출연진 및 장소 섭외 : 모델(배우) 캐스팅 및 촬영 장소 섭외
- 사. 검수 및 수정 : 기획 시안 검수 2회, 최종본 수정 2회를 과업 범위에 포함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정은 양측 협의에 따름. 발주처는 산출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 요구를 통지함.
- 아. 원본 제출 : 최종 산출물과 함께 원본 촬영본, 편집 프로젝트 파일, 사용 소스(음원, 이미지, 폰트 목록 포함)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자. 라이선스 : 영상에 사용되는 음원, 폰트, 이미지, 모델 초상권 등은 발주처가 과업 종료 후에도 기관, 매체 제한 없이 2차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증빙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함.

※ 콘텐츠 및 상세페이지 제작 전 사전 협의 필수

3. 전담 인력 구성

- 가.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
- 나. 최근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 다. 원활한 협의 및 신속한 업무 대응 체계 유지
- 라. B2G 역량 요건 : 계약 대상자는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대

상 홍보, 마케팅 수행 실적 또는 유관 네트워크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행 실적(최근 3년 내) 자료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마. 재하도급 제한 :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일부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재하도급 시에도 본 과업지시서상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계약 대상자에게 있음.

4. 기타 운영관리

- 가. 콘텐츠 초상권, 저작권(음원, 이미지, 영상 등) 침해 여부 확인, 관리 및 책임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배상 조치

- 나. 제작 및 송출 결과물 제출

- 다. 광고 성과 및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 라. 민간부담금 처리 : 계약금액의 정부지원금 41,343,091원과 민간부담금(현금) 6,750,000원으로 구성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청구 시 지원사업 관련지침에 따른 구분 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5. 성과목표(KPI) 및 최소 달성 기준

가. 본 과업은 아래 채널별 목표치를 협약기간 누적 기준으로 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기간 종료 후 상기 목표치의 각 채널별 달성률은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최소 성과 기준으로 함.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협약기간 누적)	최소 달성기준 (목표치의 80%)	산정 근거
검색광고 + 이미지형 광고	노출수(회)	1,000,000 이상	800,000 이상	예상CPM 약 6,000 원 기준 추정
언론보도	게재 건수(건)	20 이상	16 이상	마이너+메이저 매체
바이럴 마케팅	게시 건수(건)	76 이상	61 이상	블로그+카페/커뮤니티 등
동영상 광고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노출 (회)	500,000 이상	400,000 이상	예상CPM 약 10,000 원 기준 추정
블라인드 타겟광고	노출 (회)	650,000 이상	520,000 이상	예상CPM 약 12,000 원 (공무원 특화 매체) 기준 추정
인스타·블로그 콘텐츠 제작	콘텐츠 게시글 수 (건)	15 이상 (월5~6건×3개월)	13 이상	협약기간(3개월) 기준
인스타 관리	팔로워 (명)	1,000 이상	800 이상	협약기간(3개월) 기준
	좋아요 (회)	1,500 이상 (건당 100 이상)	1,200 이상	
페이스북 관리	팔로워 (명)	1,000 이상	800 이상	협약기간(3개월) 기준
	좋아요 (회)	1,500 이상 (건당 100 이상)	1,200 이상	
유튜브 관리	구독자 (%)	+500% 이상	+400% 이상	현재 구독자 기준
AI 및 자료 활용 숏폼 제작	영상 수량 (편)	10 이상 (월3~4건×3개월)	8 이상	협약기간(3개월) 기준
광고영상 제작	제작 편수 및 활용 소재	1편 제작, 3종 이상 리사이징	1편 제작, 3종 이상 리사이징	정성적 완료기준(수량 조정 불가)
B2G 미팅 주선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사업설명, 시연 미팅 성사(회)	1 이상	1 이상(하한 조정 불가)	발주처 참석, 실제 성사 기준, 회의 일시, 기관명, 참석자 기록으로 증빙
총 노출/도달 (배너/검색+동영상광고+블라인드)	노출수 합계(회)	2,150,000 이상	1,720,000 이상	

※ 상기 목표치는 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체 단가는 시장 상황 및 광고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투입 예산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최소 달성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나. 항목별 실적이 목표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미달성 사유 및 향후 보완계획을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 언론보도, 바이럴 마케팅 등 건수 기반 지표가 매체 사정으로 목표 건수에 미달한 경우, 대체 매체 또는 항목 조정을 통해 최소 달성기준(80%)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라. 항목별 달성률이 최소 달성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사업비 재정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마. 실적 인정 기준: ① 팔로워·좋아요 등 소셜 지표는 유기적(organic)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구매·어뷰징 등 인위적 부풀리기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지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바이럴 마케팅 게시물은 게시 URL 전체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정한 품질 기준(정상 운영 매체 여부 등)에 부합하여야 함. ③ 노출·클릭·전환 수치는 광고 플랫폼 원본 리포트를 근거로 검증함.
- 바. B2G 미팅 실적 인정 기준: ①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의 급식·환경·자원순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시연회·간담회로서 발주처가 실제 참석하여 성사된 미팅에 한하여 인정함. ② 실적은 회의 일시·기관명·부서·참석자·논의 요지를 기록한 미팅 결과서로 증빙함. ③ 모든 B2G 활동은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정당한 사업 설명 활동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1. 일반사항

-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련 법령 및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이하 “발주처” 라 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 계약대상자는 과업의 범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에 대한 문맥 해석 등 양측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마.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1.1.사.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 바. 본 과업에 대해 발주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이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짐.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서면으로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업수행계획(일정)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계약대상자가 사업계획 및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

3. 사업의 시행

-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나. 계약대상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다. 계약대상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라. 계약대상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계약대상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와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함.

4. 지도·감독

- 가.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계약대상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다.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대상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5. 지식 재산권 및 정보 보안

- 가. 계약대상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나.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여서는 안 됨.
- 다. 계약대상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여기에는 광고계정 및 그 집행 데이터, 원본 촬영본·프로젝트 파일, 제작 콘텐츠 일체가 포함됨.

- 라.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마. 계약대상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손해배상

- 가. 계약대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만, 계약대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았을 때는 계약대상자가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7. 사정변경 등 조치

- 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조건 위반 및 본 홍보·마케팅 용역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할 경우, 계약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의·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착오가 발생한 경우 과업 및 계약금액을 변경(감액·환수 포함)할 수 있음.
- 다.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가.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함.
-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표,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함.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음.
- 라.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배상함.
- 마. 산출물 제출 목록: 계약대상자는 사업 종료 시 다음을 일괄 제출하여야 함 - ① 최종 결과보고서(항목별 KPI 달성 실적 및 증빙 포함) ② 광고 플랫폼 원본 리포트 및 매체사 집행 내역서 ③ 바이럴·언론보도 게재 URL 전체 목록 ④ 제작 콘텐츠 일체 및 원본·프로젝트 파일 ⑤ 라이선스 증빙 ⑥ 광고계정 이관 확인서.